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병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747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6월 09일
발 의 자: 이병운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경훈, 김영옥,
김원중, 김지향, 남창진,
문성호, 유만희, 윤영희,
이경숙, 이성배 의원(11명)

1. 제안이유

- 현행 노인복지법 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어르신 교통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 마.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제2호에 따른 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통비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통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3. 교통비 지원을 받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를 이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및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여부	판단 내용
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지원대상의 기준을 규정한 선언적 조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제4조(교통비 지원 등)	○	[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인구 추계 및 지원 한도액 가정을 통한 지원금 비용 발생이 예상됨 ⇒ 총 578,864,348천원 소요예상
3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소관 부서(교통정책과)의 통상적인 내부 행정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제6조(지원체계 구축)	△	[기술적 추계 곤란] 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의 위탁 계약 등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계획(기존 시스템 연계 여부, 신규 구축 범위 등)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방식이 확정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5	제7조(지원 중단 등)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의 환수 조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법령 준용 등 행정절차 및 사후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6	제8조(사후관리)		
7	제9조(준용)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교통비 지원 등(안 제4조)

나. 전제

- (교통비 지원 등)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를 가정

- 월 대중교통 이용건수에 대중교통 중 버스 이용비율과 평균운임을 적용하여 월 버스 이용요금을 추정하고, 연간으로 환산함
- 대중교통 중 버스 이용 비율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중구·강남구 사례를 고려하여 지하철 56.2%, 시내버스 34.1%, 마을버스 9.7%를 적용함
- 70세 이상 평균운임은 시내버스 1,166원, 마을버스 1,001원 적용을 전제함
 - ※ 평균운임은 요금정산금액/승차건수로 전제, 환승이용도 포함되어 운임금액이 감경됨
- 5년간 추계는 국가데이터처의 '22년 기준 인구추계 자료의 연도별 70세 이상 인구 증가 비율을 적용함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70세 이상 서울인구수(명)	1,271,987	1,335,368	1,402,737	1,471,014	1,547,948	1,625,513
전년 대비 증가율	5.0%	5.0%	5.0%	4.9%	5.2%	5.0%

- (발생기간) 2027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7~2031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
- (미 고 려)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2027년~2031년)

라. 방법

-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공자료 활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578,864,34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교통비 지원 등(안 제4조)		104,705,527	109,987,896	115,341,460	121,373,816	127,455,649	578,864,348
	소계(a)							
수입	-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04,705,527	109,987,896	115,341,460	121,373,816	127,455,649	578,864,348

4.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예시적·제안적 금액

-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제적 입법¹⁾으로, 해당 안은 교통비 지원계획(일부 또는 전부 지원)에 따라 재정지출이 달라질 수 있음

○ [추계액 활용유의] 대략적 규모파악용 자료로 활용권장

-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표본수, 조사방식, 조사기간, 분석 심도 등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작성자

시 의 회 사 무 처 재 정 분 석 과

재 정 분 석 과 장 이 선 희

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교통비 지원 등(안 제4조)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총 578,864,34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교통비 지원 등	104,705,527	109,987,896	115,341,460	121,373,816	127,455,649	578,864,348

1) [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산출내역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70세 이상 서울인구수(명)	1,271,987	1,335,368	1,402,737	1,471,014	1,547,948	1,625,513
전년 대비 증가율	5.0%	5.0%	5.0%	4.9%	5.2%	5.0%

(‘25년 7월 기준)

월 대중교통 이용건수 (천명, a)	버스 이용비율(b)		평균운임(원, c)		버스 무료 이용 금액(억원, a×b×c×12개월)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계
15,994	34.1%	9.7%	1,166	1,001	763	186	949

① 1차년도 소요비용 = 104,705,527천원

$$= \text{'25년 버스무료이용금액} \times \text{'26년 전년 대비 70세이상 인구증가율} \times \text{'27년 전년 대비 70세 이상 인구증가율}$$

$$= 949\text{억원} \times 105\% \times 105\%$$

$$- \text{'25년 버스무료이용금액} = \text{월대중교통이용건수} \times \text{버스 이용비율(시내버스, 마을버스)} \times \text{평균운임(시내버스, 마을버스)} \times 12\text{개월} = 949\text{억원}$$

$$= (15,994\text{천명} \times 34.1\% \times 763 + 15,994\text{천명} \times 9.7\% \times 186) \times 12$$

② 2차년도 소요비용 = 109,987,896천원

$$= \text{1차년도 소요비용} \times \text{'28년 전년 대비 70세 이상 인구증가율}$$

$$= 104,705,527\text{천원} \times 105\%$$

③ 3차년도 소요비용 = 115,341,460천원

$$= \text{2차년도 소요비용} \times \text{'29년 전년 대비 70세 이상 인구증가율}$$

$$= 109,987,896\text{천원} \times 104.9\%$$

④ 4차년도 소요비용 = 121,373,816천원

$$= \text{3차년도 소요비용} \times \text{'30년 전년 대비 70세 이상 인구증가율}$$

$$= 115,341,460\text{천원} \times 105.2\%$$

⑤ 5차년도 소요비용 = 127,455,649천원

$$= \text{4차년도 소요비용} \times \text{'31년 전년 대비 70세 이상 인구증가율}$$

$$= 121,373,816\text{천원} \times 105\%$$